

수 신 : 관악구청장

참 조 :

발 신 : 법무법인 에이블 담당변호사 노 성 현

일 자 : 2023. 8. 21.

제 목 : 서울행정법원의 2023. 8. 10.자 화해권고결정(2022구단6102)에
관하여

1.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위와 같은 제목의 법률자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— 다 음 —

1. 사건의 경위

가. 귀 구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[백제요지근린공원(남현동 산67-2), 이하 ‘이 사건 사업’ 이라 합니다]을 시행하기 위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,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하였으며,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원고 이정분(이하 ‘원고’ 라 합니다) 소유의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

부동산' 이라 합니다)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.

나.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1. 6. 25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재결(2021수용0094)을 하였고,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를 하였습니다. 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2. 1. 27. 이의재결을 하였는데, 원고는 위 이의재결에도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보상금증액청구를 하였습니다(2022구단6102).

다. 원고는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된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5739 사건의 감정결과를 원용하여 2023. 3. 16.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고, 법원은 2023. 8. 10. 원고의 변경된 청구취지를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.

2. 화해권고결정의 수용여부

가. 화해권고결정의 내용

법원은 “피고(관악구청장)는 원고에게 209,355,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8. 14.부터 2023. 3. 17.까지 연 5%의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. 2.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. 3.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, 나머지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” 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.

나. 검토의견

토지에 대한 보상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70조 제1항에 따라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,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,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, 생산자물가상승률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·형상·환경·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그런데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(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5739 사건의 감정인)은 이의재결 당시 감정평가액보다 209,355,580원이 증액된 감정결과를 산정하였는데, 위 감정결과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정한 법령의 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.

한편, 원고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, 법원은 위 변경된 청구취지를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. 다만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위 변경된 청구취지와 비교하면, 소송비용¹⁾에 있어서 유리하므로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.

1) 이 사건에서 별도의 감정이 진행되지 않았는바, 감정비용은 부담하지 않습니다.

2023. 8. 21.



법무법인 에이블

변호사 노 성 현



관악구청장

귀중